# 주 문

1. 원고에게

가. 피고 B 주식회사, C은 공동하여 266,000,000원과 이에 대한 [redacted]부터 [redacted]까지는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,

나. 피고 D은 18,320,000원과 이에 대한 [redacted]부터 [redacted]까지는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.

2.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.

3.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,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 주식회사, C이 부담하고,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 중 9/10는 원고가, 나머지는 피고 D이 각 부담한다.
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